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-57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8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, 국가를 위해 희생·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긍심과 명예를 선양코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과 신청 절차를 규정함(안 제6조의2)
- 나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일부 조문의 표현 변경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2014년 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#### 4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(2013. 6. 27 ~ 7. 17) 결과 : 제출된 의견 없음

나.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원안동의

관련조문	평가기준	현황 및 검토 사항	검토 결과
• 제6조의2 (사망위로금 지급·신청)	•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	• 개정조례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, 금액, 신청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,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19조(예우 및 지원)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(보상원칙)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함	• 원안 동의

다.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 : 원안동의

- 개정 내용 중 평가지표와 관련된 내용이 없으므로 별도의 개선 의견 없음  
 라. 2013년 제1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13.8.13)

마.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국가보훈기본법」 등”을 “「국가보훈 기본법」 등”으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사망위로금 지급·신청) ①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(이하 “위로금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.

③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.

④ 위로금 신청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자의 유족이 별지 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위로금 지급이 가능한 유족의 순위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9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사망한 국가  
보훈대상자부터 적용한다.

[별지 서식]
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				
사 망 자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		
	사 망 일 자			
	지급대상유형			
신 청 인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		
	지급대상자와 관계			
	입 금 계 좌	예 금 주	금융기관명	계좌번호
<p>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   월 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 또는 인)</p> <p>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</p>				
<p>&lt;구비서류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</li> <li>2.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(국가유공자증,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)</li> <li>3. 사망자의 유족(배우자, 자녀 등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</li> <li>4. 신청자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(※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생략)</li> </ol>				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보훈기본법」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국가보훈기본법」 등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6조의2(사망위로금 지급·신청) ①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(이하 “위로금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.</p> <p>③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.</p> <p>④ 위로금 신청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자의 유족이 별지 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위로금 지급이 가능한 유족</p>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 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 
정한다.

의 순위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  
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  
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----- 시행에  
-----  
-.

**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**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**

- 비용발생 요인 : 사망위로금 지급 10,000천원
  - 산출근거 : 200,000원×50명(구 보훈대상자 4,537명의 1% 수준)
- 관련 조문 : 제6조의2(사망위로금 지급·신청)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 해당
  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**3. 미첨부 사유**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 해당
  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**4. 작성자**

작성자 이름	주민생활국 복지행정과 홍승표
연 락 처	02-3153-8807